

보일러 인증제도

1. 가정용 보일러 인증

제도 소개

대기오염 및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대기관리권역에서 제조·공급·판매되는 가정용 보일러에 대한 **법정 의무 인증제도**
※ 법적 근거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5조

제도 운영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소관부처 : 환경부 대기관리과)

인증 대상 및 기준

기체(LPG, LNG) 연료 또는 액체(등유)를 사용하는 보일러 중 「대기관리권역법 시행규칙」 또는 환경부 고시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에 해당하는 제품

항 목		1종 기준	2종 기준	
			기체연료	액체연료
배출가스	NOx	20 ppm 이하	40 ppm 이하	80 ppm 이하
	CO	100 ppm 이하	200 ppm 이하	150 ppm 이하
열효율(난방)		92% 이상	81% 이상	84% 이상

2. 환경표지인증 (친환경 보일러)

제도 소개

제품의 전과정 단계에 걸쳐 에너지 및 자원의 소비를 줄이고,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녹색제품을 선별해 로고와 설명을 표시하는 **자발적 인증제도**
※ 법적 근거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



제도 운영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소관부처 : 환경부 녹색산업혁신과)

인증 대상 및 기준

기체(LPG, LNG)를 연료로 사용하는 표시가스소비량이 70kW 미만인 가정용 보일러

항 목		인증기준
배출가스	NOx	18 ppm 이하
	CO	100 ppm 이하
열효율(난방)		92% 이상

※ 배출가스 및 열효율 외 소음, 대기전력, 소비전력, 응축수 등 추가 시험 필요
※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경우 가정용 보일러 1종 인증을 받은 것으로 간주



가정용 맑고 깨끗한 하늘을 만드는
친환경 보일러



<https://ecosq.or.kr/boiler>
에코스퀘어 > 환경인증 > 친환경 보일러 보조금
신청 문의 : 관할 지방자치단체 환경부서

본 인쇄물은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종이를 사용하였습니다.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지원 사업안내



환경부 KEITI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대기관리권역

대기관리권역이란?

대기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또는 해당 지역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지역의 대기오염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지역

권역	구분	지역
수도권	서울특별시	전 지역
	인천광역시	옹진군(영흥면은 제외한다)을 제외한 전 지역
	경기도	수원시, 고양시, 성남시, 용인시, 부천시, 안산시, 남양주시, 안양시, 화성시, 평택시, 의정부시, 시흥시, 파주시, 김포시, 광명시, 광주시, 군포시, 오산시, 이천시, 양주시, 구리시, 포천시, 의왕시, 하남시, 여주시, 동두천시, 과천시, 안성시
중부권	대전광역시	전 지역
	세종특별자치시	전 지역
	충청북도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진천군, 음성군, 단양군
	충청남도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계룡시, 논산시, 당진시,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남부권	광주광역시	전 지역
	전라남도	목포시, 여주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영암군
동남권	부산광역시	전 지역
	대구광역시	군위군을 제외한 전 지역
	울산광역시	전 지역
	경상북도	포항시, 경주시, 구미시, 영천시, 경산시, 칠곡군
	경상남도	창원시, 진주시, 김해시, 양산시, 고성군, 하동군

권역 내 가정용 보일러 설치(교체)시 유의사항

- 대기관리권역 내에서는 **친환경(환경표지)** 또는 **가정용 보일러 1종 인증제품을 설치하여야 함**
- 예외적으로 권역 내 가정용 보일러 인증 2종 인증제품을 설치하는 경우, 관할 지자체에 2종 보일러 설치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 인증받지 않은 보일러는 권역 외에서만 판매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권역 내 판매금지 표지를 반드시 부착하여야 함
- 권역 내에서 가정용 보일러 인증을 받지 않은 보일러를 제조·공급·판매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음 (「대기관리권역법」 제47조)

친환경 보일러 설치 보조금 지원

사업 목적

대기오염물질 저감효과가 크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의 보급을 촉진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

사업 내용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교체 시 보조금 60만 원 지원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동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차상위차활사업 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제49조 및 50조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
-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대상자(차상위계층 확인사업에 선정된 자)
- 지자체 저소득층 지원사업에 선정된자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다자녀(2자녀 이상**)가구
* 신청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보험료'의 전체 가구원 합산 금액 기준(휴직 등의 이유로 전월 보험료 납부 금액을 확인 불가능한 경우, 마지막으로 정상 납부한 금액을 기준)
** 막내자녀가 만 18세 이하인 경우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 100%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3인	179,415원	121,707원	181,663원
4인	219,196원	154,802원	222,471원
5인	252,203원	196,416원	256,716원
6인	288,617원	243,019원	295,134원

※ 출처 : 보건복지부

- 사회복지시설(아동, 노인, 장애인 복지시설 등)

지원 대상 보일러

- 환경표지 인증 받은 콘덴싱 가스 보일러
- 인증받은 LPG보일러
※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서 목재연료 · 연탄 · 기름보일러를 교체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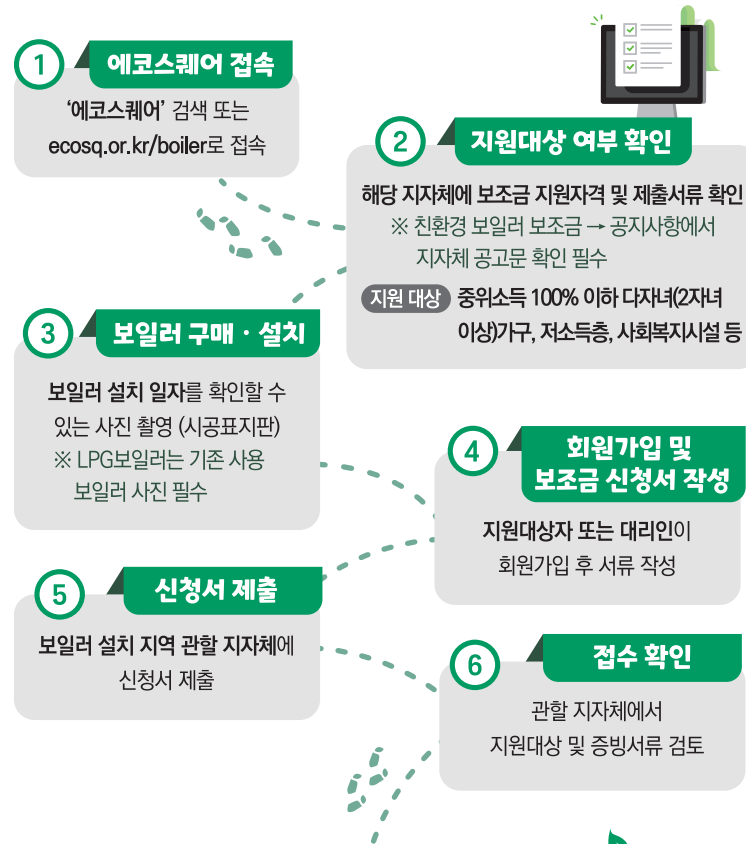
보조금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설치확인서, 보조금 지급요청서 등 작성한 서류와 증빙서류를 관할 지자체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
※ 온라인으로도 편리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에코스퀘어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서와 증빙서류 제출



7 보조금 지급

취약계층 무상교체 지원

사업 목적

환경부와 보일러 제조기업 간 업무협약을 통해 취약계층의 자부담 비용을 보일러 제조기업에서 추가 지원하여 교체 부담을 완화

$$\text{정부 보조금 60만 원} + \text{제조사 차액 지원 } \alpha = \text{신청자 부담금 0원}$$

지원 기간

2025년 예산 소진 시까지

친환경 보일러 예산 소진 시 무상교체 지원 종료

설치전 공식대리점에 지원모델 확인 후 정부 보조금 사전신청 필요

지원 모델

경동나비엔		귀뚜라미	대성셀텍에너지스	알토엔대우
지원 모델	NCB354 시리즈	거꾸로 ECO 콘덴싱 시리즈	DNC1-15D	ADB-N155BON ADB-N185BON
		NEW 콘덴싱 시리즈	DNC1-18D	ADB-N230BON ADB-N290BON
			DNC1-22N	ADB-N301BON
지원 범위	보일러 구매 금액 및 설치 비용 (단, 기본 설치 기준으로 현장 여건에 따라 일부 설치비가 추가 발생될 수 있음)			
문의	1588-1144	1588-9000	1588-8577	1588-7339

린나이 코리아는 일부 지자체와 협약하여 지원 중

지원 모델은 제조기업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친환경 보일러 교체 효과

초미세먼지 저감효과

노후보일러 1대 교체시 초미세먼지 0.22kg 저감



대기오염물질 감소

연간 소나무 22그루 심는 효과



이산화탄소 저감
약 535kg/대



질소산화물 저감
약 2.75kg/대



일산화탄소 저감
약 4.13kg/대

노후 보일러 대비 저감효과, 연간(약)

난방비 절약

높은 열효율로 연간 최대 44만원 난방비 절약



난방비 절약
(연간, 최대)

